

□ **위탁의료기관 준수사항**(①~⑥항은 위탁계약조건임)

- 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예방접종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(의사)은 사업 실시 이전에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- ④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과거 예방접종력을 조회하고 접종기록을 등록하며 비용상환을 신청한다.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)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(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)에 따라 예방접종기록을 등록한다.
- ⑤ 예방접종기록 등록, 비용상환 신청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'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'을 준수한다.
- ⑥ 개인의 과거 접종력 조회와 정보 활용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진료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
- ⑦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(어린이 예방접종업무를 같이 위탁한 의료기관은 제외한다)은 매년 8월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'예방 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사전 자율점검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'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계약 체결년도에는 계약 전 자율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⑧ 중복접종이 발생한 경우, 접종기록을 먼저 전산 등록한 위탁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.
- ⑨ 접종 전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된 서류로 대상자를 확인하고, 중복접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인플루엔자 기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□ **위탁의료기관 계약 해지**

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위탁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통지 없이 해지 가능

-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
- 위탁의료기관이 제2조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
-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

□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를 할 경우는 계약해지 신청서<별첨서식 4>를 관할 보건소로 제출

- 계약 해지일 전 비용상환 신청한 접종내역은 심사 후 지급

□ 위탁의료기관이 계약 해지 절차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 신고로 위탁계약 해지로 갈음